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 은폐배관 점검구 대체 가능



지난 2013년 7월 25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시가스 은폐배관 설치 시 천정에 가스누출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뚫거나 값비싼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따라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대한설비건설협회(이하 협회)는 실내 미관을 위해 점검구의 크기를 축소하고, 가스누출 점검을 위한 대체 방법으로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는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 설치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협회 건의에 대해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질의회신을 통해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 설치 시 은폐배관의 가스누출이 탐지 가능하므로 가정 내에서 이 밸브를 설치할 경우 점검구를 뚫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했다.[편집자주]

1. 추진배경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서 가스용금속플렉시블배관용 호스를 은폐(천정) 설치 시 점검구 또는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 의무화 규정 신설
- 천정높이의 현장여건 상 점검구를 통한 실질적인 수리보수가 불가능하고 미관상 많은 민원이 초래됨
 - 국내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생산업체가 한곳에 불과하고 일반계량기에(18,500원) 비해 10

배 이상 과도하게 책정되어(185,000원)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결국 가스사용을 기피하게 됨

- 이에따라 협회는 점검구 및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기준 폐지 건의

2. 추진결과

- 협회 의견이 반영되어 기존 2종류의 안전조치에서 3종류의 안전조치와 동등 이상의 안전조치 중 선택 가능토록 기준 합리화
- 점검구 크기를 기존 2,500cm²에서 900cm²로 축소

현 행	개 정 (안)
<p>2.5.4.5.2 저압의 내관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은폐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6)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점검구를 설치한다. 다만, 점검구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와 실질적인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2.8.6.3에 따른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한다.</p> <p>(6-1) 점검구의 규격은 가로 50cm × 세로 50cm 이상으로 한다.</p> <p>(6-2) 점검구는 점검자가 배관의 가스누출 등의 점검과 수리보수가 가능한 간격 이내로 설치한다.</p> <p>(6-3) <신설></p>	<p>2.5.4.5.2 _____</p> <p>_____.</p> <p>(1) ~ (5) 생략</p> <p>(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안전조치를 한다.</p> <p>(6-1)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를 설치한다.</p> <p>(6-2) 2.5.4.5.4에 정하는 이음매 없는 금속제 보호관을 시공하고 은폐공간의 가스누출을 가스누출검지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900cm² 이상의 점검구를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경우에는 보호관 시공을 제외한다.</p> <p>(6-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와 검지부의 확인 또는 교체가 가능한 900cm²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한다.(단, 검지부는 배관 중심으로부터 반경 8m 이내에 1개 이상으로 은폐공간 천정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3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p>

-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 설치 시 점검구 미설치 가능토록 조치
 -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에 검토를 요청하여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가 가스누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인정받음에 따라 은폐배관의 가스누출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를 대체할 수 있게 됨
 - 동등 이상의 안전조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 설치와 함께 가스용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금속제 보호관을 설치하여야 함

" 글로벌 가스안전 최고 전문기관 "

KGS Code

KOREA GAS SAFETY CODE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발 음 대한설비건설협회

참 조

제 목 은폐배관 안전조치에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 적용 가능여부 질의회신

1. 관련근거 :

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사무국-139(2.14.12.01) "은폐배관 안전조치에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 적용 가능여부 질의회신"

나. 가스정책 '15-24(2015.1.21) "은폐배관 안전조치에 가스누출확인 배관용밸브 적용 가능여부 질의"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요청한 "은폐배관 안전조치에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 적용 가능여부 질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사항

○ 코스모가스텍(주)에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 문의한 "은폐배관 안전조치에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 적용 가능여부 질의" 관련하여 가스누출확인 배관용밸브는 KGS FU551(도시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따른 은폐배관의 가스누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인정된다고 회신함.

○ 이와 관련,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가 KGS FU551 2.5.4.5.2(6)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안전조치'로 갈음이 가능한지 문의.

(즉,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로 은폐배관의 안전조치에 동등이상의 안전조치로 설치 가능한지 문의)

□ 검토결과

○ 가스기술기준위원회사무국에서 회신한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는 은폐배관의 가스누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이란 은폐배관의 안전조치(2.5.4.5.2(6))와 동등이상의 의미가 아닌, 2.5.4.5.2(6-2)의 기준 중 은폐배관의 가스누출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 기능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회신한 것입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는 은폐배관의 안전조치 중 "점검구"를 대신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이며, 동등이상의 안전조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 설치와 함께 가스용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금속제의 보호관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장



과장 가경민

감사 고행정

01/27
사무국장 지덕림

시행 가스기술기준위원회사무국-5 (2015.01.27.) 접수

우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종로 1390 /

전화 043-750-1318 전송 031-314-8189 / ka0728@kgs.or.kr / 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국민과 함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